

# 11. 不動産仲介業法施行規則中 改正令

建設部令 第551號 1994. 4. 1

부동산중개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3조의2(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한도 등) ①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, 그 한도는 매매·교환의 경우에는 거래가액에 따라 0.15퍼센트에서 0.9퍼센트이내로 하고, 임대차등의 경우에는 거래가액에 따라 0.15퍼센트에서 0.8퍼센트이내로 한다.

②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비의 한도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등의

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하되, 중개업자가 영수증등을 첨부하여 매도·임대 기타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.

③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그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·직할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한 기준에 따라 수수료 및 실비를 받아야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□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□

부동산중개수수료를 건설부령이 정하는 한도내에서 시·도조례로 정하도록 한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(93. 12. 27, 법률 제4,628호)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중개수수료의 한도를 정하려는 것으로 그 한도범위는 매매·교환의 경우에는 거래가액의 0.15퍼센트에서 0.9퍼센트이내로 하고, 임대차의 경우에는 거래가액의 0.15퍼센트에서 0.8퍼센트이내로 하도록 함. (건설부 제공)